

의안번호	2220391
의 퇴 인	차규근 의원
회 답 일	2026. 9. 2.
추 계 번호	26A3961

공익목적회사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 (조세감면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「법인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4조제1항 (지원 등)	○ 기획예산처장관이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음 － 융자·보증 또는 투자 － 공익목적회사를 창업하려는 자 및 창업기업의 발굴·육성 － 그 밖에 공익목적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3	안 제14조제2항 (지원 등)	○ 기획예산처장관이 공익목적회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24조 (과태료)	○ 유사명칭 사용금지, 설립인가·설립등기의무, 운영의 공개의무 및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(조세감면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조제1항(지원 등)	
3	안 제14조제2항(지원 등)	
4	안 제24조(과태료)	○ 미대상(재정수입의 증가)

2. 상세사유

- 제정안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, 기획예산처장관이 공익목적회사에 대하여 융자·보증 또는 투자 등의 지원을 하거나 공익목적회사의 육성·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제정안에 따른 공익목적회사란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「상법」 상 주식회사를 말함
- 다만, 현시점에 제정안에 따라 설립될 공익목적회사의 규모와 조세감면 및 지원의 대상·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제정안은 「법인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감면 세목·대상·감면율 등은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별도로 정하여져야 하고, 제정안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될 공익목적회사의 수와 과세표준 규모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정수입 감소분을 특정하기 어려움
 - 공익목적회사에 대한 융자·보증·투자, 공익목적회사를 창업하려는 자 및 창업기업의 발굴·육성 등에 대한 지원은 그 대상·방식·규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
 -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의 대상·범위와 실시 주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추계기간 동안의 실시 횟수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현시점에서 실태조사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